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45

발의연월일: 2022. 9. 14.

발 의 자: 박대수 · 구자근 · 김선교

김용판 · 김정재 · 김희곤

안병길 · 이종배 · 이종성

이주환 · 조명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지방하천은 약 90%에 달하고 있음.

2020년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도록 되었고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방하천의 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지자체가 시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 화하고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제7조제4항 신설 등).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⑨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국가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을 말한다)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이</u>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
	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
	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u> <신 설></u>	⑨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의
	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제64조(비용보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	
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
	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
	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
	을 말한다)의 하천공사 및 유
	<u>지·보수</u>
<u>2.</u> · <u>3.</u> (생 략)	<u>3.</u> · <u>4.</u> (현행 제2호 및 제3호
	와 같음)